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이하 “을”이라 함)에게 “갑”의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정한 바를 준수하여 “을”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가맹점 모집)

- ① “을”은 “갑”이 정한 가맹점 모집기준(이하 “모집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하 “모집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고,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갑”이 정한 소정의 양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약관을 교부, 설명하고 이를 작성 완료토록 한 후에 해당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모집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갑”에게 접수토록 한다.
- ② 전항의 신청서 작성 방법, 필수 징구 서류, 모집 시 유의사항, 기타 모집 시 필요한 사항은 별첨) 가맹점 모집기준 및 “갑”이 정하여 수시로 “을”에게 통보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에 대하여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신청을 승인한다.
- ④ “갑”은 본조 제2항의 심사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승인 통보 받은 모집점에 대하여 “갑”의 가맹점 스티커 및 판촉물을 부착·전달하도록 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 ① “갑”은 “을”의 가맹점 모집 및 영업여부 확인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기간 내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갱신은 하지 아니한다.
- ② “을”은 “갑”의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수료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기로 하며, 계약기간 중 “갑”의 내부정책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화, 물가상승,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모집수수료에 대한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로서 모집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모집수수료의 적용 시기는 해당 통지서 상에 기재된 시점으로 한다.

제5조 (“을”의 준수사항)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과대선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을”은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기재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승인한 가맹점에게 “갑”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영업관련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영업정보 및 신청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위임받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갑” 또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7. “을”은 자신이 모집한 가맹점이 불량가맹점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갑”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을”은 기타 관련법규, 감독기관의 지시 및 명령, 기타 “갑”이 정한 규정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전항 제5호는 본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6조 (교육 및 활동상황 보고 등)

“갑”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을”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위임업무에 관련하여 가맹점 ‘사고 발생’ 또는 ‘사고 발생 우려’의 사유로 활동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 ① “을”이 본 계약 또는 “갑”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갑”은 제①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3. “을”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4. “을”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 변조한 경우
 5. “을”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갑”의 판단기준으로 불량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6. “을”이 3개월 이상 모집 실적 없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을”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통지로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은 “갑”의 정책변경, 법률변경, 감독기관의 명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④ “갑” 또는 “을”이 제①항 각 호 및 제②항 이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갑”과 “을”간의 계약은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사항을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기로 한다.
 1. “을”이 폐업신고 또는 해산한 경우
 2. “을”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을”이 가맹점 모집인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갑”이 확인하거나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제10조 (기타 사항)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 불가 시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위탁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본 계약상의 어떤 규정도 “갑”이 자신의 로고, 상표, 디자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호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성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동 권

(인)

“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이하 “을”이라 함)에게 “갑”의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정한 바를 준수하여 “을”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가맹점 모집)

- ① “을”은 “갑”이 정한 가맹점 모집기준(이하 “모집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하 “모집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고,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갑”이 정한 소정의 양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약관을 교부, 설명하고 이를 작성 완료토록 한 후에 해당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모집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갑”에게 접수토록 한다.
- ② 전항의 신청서 작성 방법, 필수 징구 서류, 모집 시 유의사항, 기타 모집 시 필요한 사항은 별첨) 가맹점 모집기준 및 “갑”이 정하여 수시로 “을”에게 통보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에 대하여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신청을 승인한다.
- ④ “갑”은 본조 제2항의 심사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승인 통보 받은 모집점에 대하여 “갑”의 가맹점 스티커 및 판촉물을 부착·전달하도록 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 ① “갑”은 “을”의 가맹점 모집 및 영업여부 확인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기간 내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갱신은 하지 아니한다.
- ② “을”은 “갑”의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수료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기로 하며, 계약기간 중 “갑”의 내부정책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화, 물가상승,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모집수수료에 대한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로서 모집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모집수수료의 적용 시기는 해당 통지서 상에 기재된 시점으로 한다.

제5조 (“을”의 준수사항)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을”은 과대선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 2. “을”은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을”은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기재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을”은 “갑”이 승인한 가맹점에게 “갑”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영업관련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하여야 한다.
 - 5. “을”은 “갑”의 영업정보 및 신청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위임받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갑” 또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을”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 7. “을”은 자신이 모집한 가맹점이 불량가맹점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갑”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8. “을”은 기타 관련법규, 감독기관의 지시 및 명령, 기타 “갑”이 정한 규정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전항 제5호는 본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6조 (교육 및 활동상황 보고 등)

“갑”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을”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위임업무에 관련하여 가맹점 ‘사고 발생’ 또는 ‘사고 발생 우려’의 사유로 활동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 ① “을”이 본 계약 또는 “갑”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갑”은 제 ①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 “을”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 3. “을”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 4. “을”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 변조한 경우
 - 5. “을”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갑”의 판단기준으로 불량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6. “을”이 3개월 이상 모집 실적이 없는 경우
 - 7.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을”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통지로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은 “갑”의 정책변경, 법률변경, 감독기관의 명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④ “갑” 또는 “을”이 제 ①항 각 호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갑”과 “을”간의 계약은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사항을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기로 한다.
 - 1. “을”이 폐업신고 또는 해산한 경우
 - 2. “을” 본인이 사망한 경우
 - 3. “을”이 가맹점 모집인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갑”이 확인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제10조 (기타 사항)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 불가 시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위탁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본 계약상의 어떤 규정도 “갑”이 자신의 로고, 상표, 디자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호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성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동 권

(인)

“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인)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첨부>

가맹점 모집 시 Check Point

구분	Check Point		비고
대표자 확인	대표자 본인여부/연령확인	- 가맹점 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 - 대표자와 실질운영자 관계 확인	★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신청서 접수시 별도로 실사내용 전달 ★ 신청서 상의 실사란 약도를 정확히 기재 ★ 가맹점주의 연락처 정확히 기재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실제 영업 확인	간판설치	- 가맹점명과 간판명 동일여부 및 간판부착 여부 확인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에 매장 소재有無 - 사업장소재지와 가맹점주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 - 사업장소재지와 대표자 자택이 원거리 여부 등	
	상거래 유형	- 가맹점신청서 상에 표기된 업종이 일치하는지 여부 - 비대면상거래 여부 확인 ^① - 회원제, 다단계, PG업체인지 확인 ^②	
	제품진열/제품유형	- 매장내 제품진열 유무 - 매장내 제품 카다로그 비치여부 확인 - 환금성 제품(귀금속, 상품권, 미곡 등) 취급 여부 ^③	
	단말기 설치현황	- 단말기 설치여부 - 단말기의 유선/무선 여부	